



2020 외국인 유학생 학사안내

1 졸업요건 (공통사항 토픽 4급)

- TOPIK 4급 이상 취득(또는 TOPIK 4급 점수의 90%이상 성적 취득)
- 전 학년 출석률 90% 이상이면서 평균학점 C 이상

2 신입생

- 졸업학점 120학점 (전공과목 69학점, 핵심교양과목은 4학점)

3 편입생

	3학년	4학년
유사 전공 편입학생	졸업학점 60학점 (전공 51학점 + 교양 포함 기타 자율 9학점)	졸업학점 30학점 (전공 21학점 + 교양 포함 기타 자율 9학점)
비유사 전공 편입학생	졸업학점 60학점 (전공 51학점 + 교양 포함 기타 자율 9학점)	졸업학점 45학점 (전공 42학점 + 교양 포함 기타 자율 3학점)

- 단, 특정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입생 교육과정, 전공 이수학점 등은 다른 기준에서 적용될 수 있다.
- 노작교육과 지역사회공헌 학점은 졸업에 요하지 않는다.
- 타과에 전공과 관련 있는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, 유사전공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4 어학 수업

-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집중과정
- 전공 한국어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.
- 교양과목은 한국어학 수업으로 12학점까지 대체될 수 있다.

5 평가

- 내국인 대상 수업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로 성적이 부여된다.
- 국제화 수업, 외국인 학생 전용수업: 상대평가2(A: 40%까지, B: 50%까지, C: 최소 10%)



6

출석 (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)

-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당일과 왕복 여행기간
- 총장이 승인한 행사 및 재시험에 참가할 경우는 당일과 왕복 여행기간
- 부모,조부모의 상 또는 본인의 결혼인 경우 10일간

7

학사경고

-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**1.25**에 미달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부과한다.

8

휴학기간

-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1년 후에도 복학할 수 없거나,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절차를 밟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한다.

9

자퇴

-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자퇴신청을 하고, **7일 이내**에 출국하여야 한다.

10

타대학 편입

- 타 대학으로 편입은 규정상 불가하다.

11

전과

- 2학년, 3학년, 4학년에 신청할 수 있다. 단, 재학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고, 1년 재학 후에 신청 가능하다.
- 전과에 필요한 요건은 전과를 신청한 학기까지 취득 학점이 학년 당 평균 30학점 이상으로 평균평점이 2.50 이상이어야 한다.